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 서류

서류구분	확인자격	소득세 납부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자격 입증서류	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원본, 직인날인)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(원천징수영수증 포함)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원본)	- 해당직장 - 세무서 - 국제청홈택스 - 국민건강 보험공단
	자영업자	①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원본)	
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①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, 위촉(해촉)증명서 *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소득세납부 입증서류	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 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납부내역증명서 및 납세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*결정세액이 "0" 또는 "환급확인자"의 경우 "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" 추가제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원본 ⑤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위촉증명서(해촉증명서)	- 해당직장 - 세무서 - 국제청홈택스

*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원본, 직인 날인 필수입니다.

*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. *적용례) 2015, 2016, 2018, 2021, 2022년에 소득세 납부한 경우에도 가능

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

해당자격	자산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부동산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	필수 ① 부동산 소유 현황 (*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*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)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*전국단위발급)	①, ② 등기소 (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) ③ 행정복지센터, 위택스
	추가 (해당자)	④ 공동(개별)주택공시가격 확인원 (*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) 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[*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] 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[*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] (서울시 : 'ETAX 이용안내 > 조회/발급 >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'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(서울시 외 : '위택스 > 지방세정보 > 시가표준액조회'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
부동산소유현황 이 없는 경우	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'부동산 소유 현황' 조회결과(*세대원별 각각 발급)를 인쇄 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(*전국단위발급)	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② 행정복지센터, 위택스